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-182호

# 공유수면 방치 선박 등(물건) 제거 공고

우리청 관할 공유수면에 방치된 텐트 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은 제거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1월 24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3일

**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**

1. **(공고 기간)** 2026. 11. 3.(화) ~ 11. 24.(화)

2. **(제거 대상)** 붙임 참조

3. **(제거 예정일 및 방법)**
   가. 제거 예정일: 2026. 12. 3.(목) 이후
   나. 제거 방법: 직권제거

4. **(소유자·점유자 등 유의사항)**

   가.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위 기간 내 텐트 등 해당 물건을 자진 수거하거나 제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나. 제출된 의견 및 자진 수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.

   다. 제거에 든 비용은 같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텐트 등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.

5. **(기타)** 이의신청 또는 기타문의는 해양수산환경과(☎051-609-652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방치 물건 현황 1부. 끝.

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-182호

# 방 치 선 박 등 (물 건) 제 거 공 고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**발견장소** |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32-3 지선 앞 공유수면 | | | |
| **선박제원** | **선명(소유자)** | - | **선박번호** | - |
| | **선 적 항** | - | **톤수** | - |
| | **주요치수** | - | | |
| **관리청** | 부산지방해양수산청 | **관리번호** | 제2026 - 03호 | |
| **제거 예정일자** | 2026년 12월 3일(목) 이후 | | | |
| **제거방법** | 직권 제거(폐기 처리) | | | |
| **공매장소 및 일시** | - | | | |
| **입찰보증금** | | | | |

**전경사진**




위 텐트 3동 등 방치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유발 우려를 야기하므로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직권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, 이의신청 또는 기타 문의는 **2026년 11월 24일까지**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(☎ 051-609-652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3일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

(담당자: 남상균 주무관, 전화번호: 051-609-6526 )